의안번호	제32호
의 결 연 월 일	2002년 월 일 (제206회)

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02년 월 일

법무통계담당관 심사필

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2

제출연월일 : 2002년 월 일
제 출 자 : 충 청 북 도 지 사

□ 제안이유

○ 물품관리에 있어서 불용품의 처분제도를 정보화시대에 맞게 개선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 함

□ 주요골자

○ 불용품의 소요조회시 관보나 공문을 통하여 실시하던 것을 조달청 및 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

□ 의안전문 : 따로붙임

□ 조 례 안 : 따로붙임

□ 신·구조문 대비표 : 따로붙임

□ 관 계 법 령 발 췌 : 따로붙임

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물품관리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, 축산물, 기타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 통보서에 의거 도지사의 결재를 받아 불용결정을 하여야 하며 활용가능품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

③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단위당 물품취득가격(장부가격 기준)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조달청 및 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6조(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) ①물품관리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한 후 소요기관이 없을때와 임산물, 축산물, 기타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의거 도지사의 결재를 받아 불용결정을 하여야 한다	제16조(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) ①물품관리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, 축산물, 기타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의거 도지사의 결재를 받아 불용결정을 하여야 하며 활용가능품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
1. ~ 8.(생략)	1. ~ 8.(현행과 같음)
②(생략)	②(현행과 같음)
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단위당 물품취득가격(장부가격 기준)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.	③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단위당 물품취득가격(장부가격 기준)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조달청 및 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할 수 있다.

관 계 법 령

□ 지방재정법

제100조(물품의 처분등)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 또는 처분 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없는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.

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매각하는 것이 불리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매각할 수 없는 물품이 있을 때에는 이를 폐기할 수 있다.

③물품의 매각을 목적으로 한 것이거나 불용의 결정을 한 것이 아니면 이를 매각할 수 없다.

□ 지방재정법시행령

제123조(불용결정) 법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물품의 불용결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불용결정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.

1. 불용의 결정을 하고자 하는 물품의 분류번호·품명·규격·수량 및 가액
2. 물품의 구입연월일과 물품의 상황
3. 물품의 사용경위
4. 불용의 결정을 하고자 하는 이유
5.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의 확인여부
6. 처분방법